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가합6693(본소), 2016가합110162(반소)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지료 · 부당이득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피고인수참가인C

피고보조참가인D

변론 종결 2017. 1. 17.

판결 선고 2017. 2.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1)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목록 1층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70.72㎡(101, 102호), 3층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6㎡(303호), 3층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0.6㎡(304호), 4층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1.8㎡(401~403호), 4층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1.8㎡(404~406호), 5층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1.8㎡(501~503호), 5층 도면 표시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1.8㎡(504~506호) 부분을 각 철거하고,

2) 29,400,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6. 5. 18.부터 피고(반소원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반소피고)의 위 토지 중 원고(반소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972,3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인수참가인은,

1)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3목록 2층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1.8m²(201~203호), 2층 도면 표시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1.8m²(204~206호), 3층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1.2m²(301, 302호), 3층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1.2m²(305, 306호) 부분을 각 철거하고,

2) 15,451,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8.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6. 5. 18.부터 피고인수참가인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반소피고)의 위 토지 중 원고(반소피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40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반소원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은 공동하여,

1)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4목록 지하 1층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5.80m²(공용부분 지층), 1층과 옥탑 1층, 옥탑 2층 각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6m²(각 엘리베이터, 계단실 22㎡의 합), 2층 내지 5층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9m²(각 엘리베이터, 계단실, 복도 42.25㎡의 합) 부분을 각 철거하고,
2)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264.5/363.7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주문 제1의 가.항, 제1의 다.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가. 44,067,000원과

나. 2016. 5. 18.부터 피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70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다. 위 각 돈에 대한 2016. 5. 1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2016. 12. 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청구원인과 당사자 주장의 전취지상 위와 같이
선택하기로 한다).

2.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소

주문 제1의 나. 1) 2)항, 제1의 다.항 및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 5. 18.부터 피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위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40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한 2016. 5. 1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6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신축 경위

- 1) E는 서울 강서구 F 대 363.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G과는 1998. 3. 21.에, 다른 공유자인 H과는 1998. 6. 26.에 각 위 공유자들 지분(공유자 I, J 지분 포함)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계약당사자들은 계약과 동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 2) E는 1998. 9.경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신축공사를 실시하였다.
- 3) H, I, J, G은 1998. 9.경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K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1998. 10. 1.경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 4) H, I, J, G은 E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자금을 마련하여 주기 위해 1998. 7. 14. 관악농협협동조합(이하 '관악농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악농협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 5) E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토지 지분 및 건물 소유권 취득 경위

- 1) 그러던 중 관악농협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G, H, I, J 지분(363.7분의 264.5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2006. 9. 1.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 2) 위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매각결과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관악농협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은 말소되었다.
-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후 E와 H, I, J, G 및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14255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7.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E는 건물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고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4)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법원 M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2013. 4. 3. E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각 호실마다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4. 12. 16.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토지 지분 취득 경위

- 1) 피고는 N 명의로 원고로부터 2014. 12. 4. 50,000,000원, 2014. 12. 16. 150,000,000원을 이자 월 2.5%, 지급이자에 대한 연체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2014. 12. 3.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4. 12. 16.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3) 그러던 중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다른 채권자 O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이 법원 P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5. 8. 28.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수참가인의 일부 호실 소유권 취득

- 1)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제기 이후인 2015. 10. 28. 피고로부터 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중 10개 호실(201~206호, 301호, 302호, 305호, 306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2)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16개 호실(101호, 102호, 303호, 304호, 401~406호, 501~506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8, 9, 12,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 1) E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기 전 이 사건 토지에 관악농협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지분에는

가압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존재하여 대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 10개 호실을 취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5. 8. 28.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대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와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위 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아울러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5. 8. 28.부터 2015. 10. 27.까지의 지료 상당액(이 사건 건물 26개 호실 분)인 13,804,700원과 2015. 10. 28.부터 2016. 5. 17.까지의 지료 상당액 30,262,545원(이 사건 건물 16개 호실 분) 및 2016. 5. 18.부터 2017. 8. 17.(원고와 피고의 토지소유권상실일)까지 월 4,70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0. 28.부터 2016. 5. 17.까지의 지료 상당액 15,451,306원(이 사건 건물 10개 호실 분)과 2016. 5. 18.부터 2017. 8. 17.(원고와 피고의 토지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401,58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다음 대지사용권한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서 대지사용권도 취득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대지사용권까지 종된 권리로서 취득하였다. 설령 E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4. 12.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2)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원고는 부동산전문가로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만약 원고의 지료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 625,000원 반환청구권 및 불법적인 취급수수료 명목의 10,000,000원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의 지료청구권과 상계하고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0.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대로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담보권을 침해하게 되어 불법행위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가)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등 참조),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비로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절차로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집합건물 성립 후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신축된 집합건물과 대지의 분리처분을 금지할 경우 집합건물 성립 이전의 상태로 교환가치를 담보로 취득한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후 집합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사정에 따라 대지의 이용·처분이 제한되어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가치만큼 감소된 대지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성립 이전에 이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가 진행된 결과 매각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E가 신축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원시취득 하였는데, E가 원시취득 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이미 관악농협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② 당초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G, H이 E에게 건물 신축을 위하여 대지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여서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등기가 되지 않아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되었던 것도 아닌 점, ④ 피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2013. 4.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4. 12. 16.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위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분에는 O, 동수원신용협동조합과 원고 등 명의로 된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후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본문 소정의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소유의 16개 호실 및 공용부분에 관하여 이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2015. 8. 28. 이후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점유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기간 동안의 지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Q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8. 28.부터 2016. 5. 17.까지 263일간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면적(264.5m²)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은 41,745,000원이고, 2016. 5. 18. 이후로는 월

4,8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의 10개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5. 10. 27.까지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후로는 나머지 16개 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을 계산(원 미만 계산단위 버림)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고는 감정인의 위 감정결과에 따른 위 임료 상당액의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인의 조사방법 및 판단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 8. 28. ~ 2015. 10. 27.(61일간)	1일당 158,726원(= 41,745,000원 / 263일)	9,682,286원(=158,726원 × 61일)
2015. 10. 28. ~ 2016. 5. 17.(202일간)	19,730,862원(=158,726원 × 202일 × 16/26)	
합계		29,413,148원
2016. 5. 18. 이후	1개월 당 4,830,000원	월 2,972,307원(= 4,830,000원 × 16/26)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9,413,148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또 2016. 5. 18.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972,3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5. 18. 이후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따로 구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가 불법행위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0,000,000원의 약정이자를 이자제한법상 이율을 초과하는 월 2.5%로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625,000원을 초과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10. 14.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7.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지료 부당이득금채권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위 날짜에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지연손해금	29,413,148원에 대한 2016. 5. 18.부터 2016. 10. 17.까지의 5개월간 지연손해금 612,773원(= 29,413,148원 × 5% × 5/12)	-12,227원
원금	29,413,148원	29,400,921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9,400,921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또 2016. 5. 18.부터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2,972,3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대여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불법적으로 취급수수료 명목의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상계 후 남는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다만, 원고는 2016. 5. 18. 이후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따로 구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와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수생

판사심재광

판사목혜원

별지